

【일반회계】

한옥수선 및 신축 지원사업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해 한옥 수선 또는 신축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한옥의 무분별한 철거 및 개발을 억제하여 한옥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감 (B-A)	(B-A)*100/A
1,570,000	1,570,000	2,100,000	530,000	33.8%

사업설명 (단위 : 천원)

사업목적

-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위해 한옥 수선 또는 신축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한옥의 무분별한 철거 및 개발을 억제하여 한옥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함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등)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한옥밀집지역(북촌, 인사동, 돈화문로, 운현궁 주변, 경복궁 서측) 내 등록한옥 및 등록예정 한옥 소유자로 한옥수선 등의 공사비용 보조 및 용자 신청자
- 사업기간 : 2001년~계속사업
- 사업내용 : 공사종별 최대 1억원 내에서 보조 및 용자 지원

구 분	보 조	용 자
전면 수선 등	최대 6천만원	최대 4천만원
비한옥 → 한옥 신축	최대 8천만원	최대 2천만원
지붕 등 부분수선	최대 1천만원	-

※ 한옥 외관(보조금) 공사비용의 3분의 2 범위 안에서 보조지원
 한옥 내부(용자금) 공사비용의 범위 안에서 용자지원

- '15년도 소요예산(안) : 2,100,000천원
 - 보조금 1,400,000천원, 용자금 700,000천원

□ 추진경위

- 2000.10.09 : 북촌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002호)
- 2002.05.20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 2002.07.02 : 한옥밀집지역 지정(북촌)
- 2006.05.03 : 북촌 장기발전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69호)
- 2008.12.23 : 서울한옥선언-한옥주거지 보전 및 진흥계획(시장방침 제735호)
- 2009.03.05 : 한옥밀집지역 지정 확대(운현궁 주변, 인사동, 돈화문로)
- 2009.05.28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보조금·융자금 상향조정)
- 2010.06.24 : 한옥밀집지역 지정 확대(경복궁 서측)
- 2014.06~ : 한옥밀집지역 지정 확대 검토(성북구 성북동 앵두마을, 선잠단지)

□ 2015년도 예산(안)(단위 : 천원)

구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안)(B)	증감(B-A)
계	1,570,000	1,570,000	2,100,000	530,000
민간자본보조	1,200,000	1,200,000	1,400,000	200,000
한옥수선 및 신축지원 보조				
민간융자금	370,000	370,000	700,000	330,000
한옥수선 및 신축지원 융자				

□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보조금 : 1,400,000천원
 - 한옥전면수선 : 17동×60,000천원/동 = 1,020,000천원
 - 한옥부분수선 : 6동×10,000천원/동 = 60,000천원
 - 비한옥→한옥신축 : 4동×80,000천원/동 = 320,000천원
 - 융자금 : 700,000천원
 - 한옥전면수선 : 16동×40,000천원/동 = 640,000천원
 - 비한옥→한옥신축 : 3동×20,000천원/동 = 60,000천원
- ※ 2015년 성북구 성북동(앵두마을, 선잠단지)을 및 익선동(도시환경정비사업 해제예정)을 사업대상지역인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공고할 계획으로 지원 대상 건물이 기존 대비 200여동 증가
- ※ 2014년 6월말 기준 예산집행률 75.35%(민간융자금 예산집행률 96.48%)로 하반기에는 예산부족이 예상되어 보조 및 융자금 지급 불가에 따른 다수 민원 발생 우려

사업추진 절차

○ 집행절차

- 보조금) 예산편성 → 보조금 신청 (민원인→서울시) → 한옥위원회 심의 → 보조금 지급 (서울시→민원인)
- 용자금) 예산편성 → 용자금 신청 (민원인→서울시) → 한옥위원회 심의 → 용자금 대하 (서울시→우리은행) → 용자금 지급(우리은행→민원인)

사업효과

○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2012년도	· 한옥등록 25건 · 보조금 지원 25건(1,140백만원), 용자금 지원 15건(507백만원)
2013년도	· 한옥등록 19건 · 보조금 지원 28건(1,200백만원), 용자금 지원 12건(370백만원)
2014년도 (6월말 기준)	· 한옥등록 9건 · 보조금 지원 16건(826백만원), 용자금 지원 9건(35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01~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
한옥등록	559건	358건	32건	15건	7건	17건	43건	34건	25건	19건	9건
보조금 지원	414건 13,889	224건 6,684	33건 861	22건 513	12건 283	9건 252	17건 750	28건 1,380	25건 1,140	28건 1,200	16건 826
용자금 지원	244건 5,773	116건 2,157	21건 420	20건 400	7건 140	4건 80	15건 500	25건 842	15건 507	12건 370	9건 357

○ 향후 기대효과

- 서울시의 한옥 보전 및 진흥 사업을 통해 한옥에 대한 인식은 ‘친환경’, ‘웰빙’ 주택이라는 이미지로 크게 변화하였으며, 그간 한옥멸실률이 40%→14%로 감소하는 등 한옥주거지 보전을 통하여 서울의 도시경관 회복, 주거유형의 다양화, 역사·문화적 정체성 회복을 도모하고 있음
- 국내외 언론으로부터도 뜨거운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외국인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 매년 북촌, 인사동 등 한옥밀집지역의 국내외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음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구분	투자 심사	학술 용역	정보화 예비 심사	홍보· 간행물 심의	기술 심사	공유재산 심의	축제·행사성 경비	민간 이전 경비
해당 여부	○	×	×	×	×	×	×	×
심의 일자	2014.9.30 통과(적정)	-	-	-	-	-	-	-

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서울 한옥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도 현대인에 맞는 한옥의 진화 모색
- 한옥의 기능, 내구성, 경제성 향상 및 공간 활용도 증진 방안 마련
- 지속적 한옥 수선 등 지원으로 한옥밀집지역 경관개선

○ 추진일정(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100,000	
한옥수선 등 보조금 지급	2015.1~12	1,400,000	공사완료 후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 및 용자 지원
한옥수선 등 용자금 지급		700,000	

집행결과 (단위 : 천원)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용·불용 실적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사·사고)	불용
2011	1,580,000	-	642,000	2,222,000	2,222,000	-	-
2012	1,800,000	-	-	1,800,000	1,647,000	-	153,000
2013	1,570,000	-	-	1,570,000	1,570,000	-	-

※ 2011년 민간대행사업비(100-402-02) 642,000천원을 민간용자금(100-501-01)으로 전용

결산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없음

◆본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북촌 한옥마을 홈페이지 (<http://bukchon.seo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본부·국	부서명	담당자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조성팀장	이기봉 2133-5572	주무관	한희진 2133-5577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계획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http://opengov.seoul.go.kr/sanction>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 안내문

서울시에서는 역사문화도시 서울 고유의 도시경관을 보전·회복하고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며 문화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의 지정·공고한 “한옥밀집 지역 안에 위치한 등록한옥 및 한옥등록예정자”에 대하여 한옥의 수선비 일부 보조 및 용자 비용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과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한옥수선 등에 소요되는 보조 및 용자금을 지원 받으실 경우 한옥위원회의 심의 지원결정 전에 기존 한옥의 멸실이나, 한옥 수선 공사 착수를 진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한옥수선 비용지원 신청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에 제출 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절차 등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과 사전에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옥위원회 관련서류 미비, 보조·용자 지원기준(한옥수선등 가이드라인)에 부적합할 경우 위원회 심의 상정이 불가능함을 알려 드리며, 한옥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해당 구청으로 통보 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한옥수선 등 지원 결정 통지를 받으시면, 통지를 받으신 날부터 1년 이내에 한옥 수선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시고 공사를 진행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승인을 얻으셔서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3. 한옥수선 등 공사를 진행하실 때 지원결정 당시 도면을 준행 진행 하여야 하며, 변경 부분이 발생 시 변경 심의를 들어오셔야 하고, 공사 완료신고 시 지원결정 당시와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감액이 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며, 한옥등록예정 결정을 받으신 한옥 신축의 경우에는 완료신고 제출 이전 또는 함께 해당 한옥의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4. 한옥 수선 등의 지원은 매년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원신청이 많아 해당 예산이 모두 소진 된 경우 부득이하게 지원 일정이 늦춰질 수 있으며, 융자금의 경우 권한을 수탁한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르므로 여신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 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융자조건은 3년 거치 10년 균 등 분할상환(제반 세금 및 수수료 연 1%는 해당 수탁 금융기관에서 징수)입니다.

5. 지원을 받은 한옥의 경우 등록의 유효기간(보조금 : 최종 지원일로부터 5년, 융자금: 융자금의 상환 완료일)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지 않으며 지원금을 받은 당시의 용도와 가로입면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지원된 보조금 및 융자금이 환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당 한옥은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니 이에 응해 주시기 바라오며,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에 게도 지원된 한옥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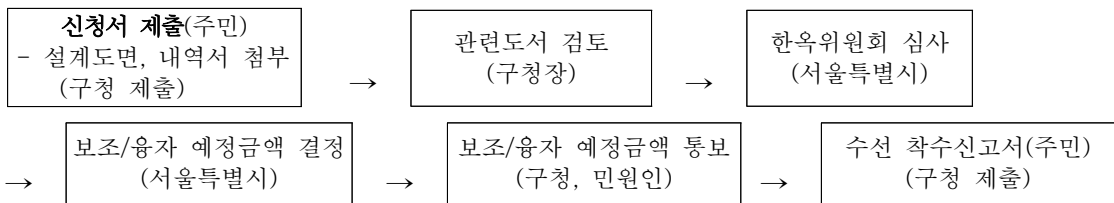
본인은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 위의 1번~5번 사항을 모두 안내 받았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서명 합니다.

- 건물위치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성 명 :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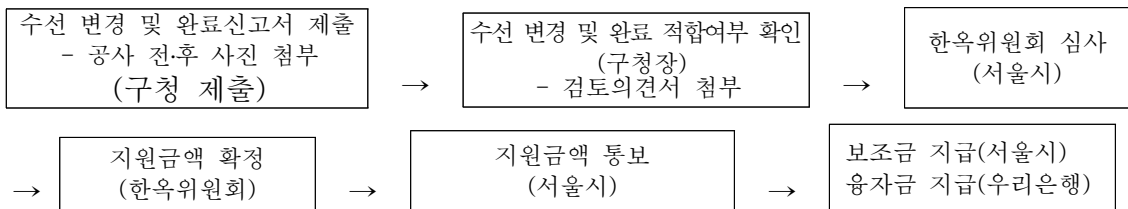
2015년 월 일

지원절차

○ **보조/융자 지원 결정**



○ **보조/융자 지급승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한옥 수선 사례



개·보수 지원 전



개·보수 지원 후



개·보수 지원 전



개·보수 지원 후



개·보수 지원 전



개·보수 지원 후